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8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8. 2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8. 26.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0. 9. 8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아동청년과장 류필상

### 가. 제안이유

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-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2) 다른 조례와의 관계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3) 기본계획의 수립,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4)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5)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및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

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

안 제6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,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

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

안 제10조는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○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영유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중 약 30%에서 심리·정서적으로 건강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과 발달 지원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.
-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하고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양육자에 대한 교육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‘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사회’ 조성을 위한 지역 연계·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발달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발달심리치료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상담·치료·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보여짐.
- 다만,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되며, 상담·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. 또한 이 사업은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로 구 재정 에 부담이 됨으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국시비 확보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